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1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2.

발 의 자:문금주・박 정・문정복

이기헌 • 권칠승 • 김영배

황정아 · 정을호 · 이훈기

서삼석 • 김 윤 • 송옥주

이광희 · 문대림 · 윤준병

복기왕 • 임미애 • 김기표

이원택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해양 투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 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, 농수축산업인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해야 할 필 요성이 커지고 있음.

이에 「국가재정법」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」

(의안번호 제171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